

2026년도 재활용의무량 산정을 위한 2025년도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I 개요

□ 목적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여야 하며, 2026년도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2025년도) 제품 출고·수입 실적서를 4월 15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6조제1항 및 제4항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4조
-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법령” 탭에서 “전기·전자” 키워드 검색 후 전문 확인 가능

□ 제출대상: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제조·수입업자)

-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을 제조(주문자상표부착 방식의 경우 그 주문자를 말함)하거나 수입하는 자^① 중 규모기준^②에 해당하는 자

① 재활용의무대상 ☞ 비대상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

제품군	대상 제품	비대상 제품
1.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	가. 냉장고, 에어컨 등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나. 세탁기,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QR 참고] 
2.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가. 디스플레이기기(100cm ²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만 해당) 나. 이동전화단말기 다. 통신·사무기기(이동전화단말기는 제외) 라. 그 밖의 일반 전기·전자제품	
3. 태양광 패널	태양광 패널	

※ [비대상 제품] 시행령 제14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제2025-68호)

② 규모기준(영 제14조의2) ☞ 기준에 해당하면 실적서 제출 필요

구분	제조업자 (OEM의 경우, 주문자)	수입업자	제조·수입 병행
규모기준	2025년도 전기·전자제품 <u>제조매출액 10억 이상</u>	2025년도 전기·전자제품 <u>수입액 3억 이상</u>	2025년도 전기·전자제품 <u>제조매출액 및 수입액이 하나라도 기준 금액 이상인 자</u>

○ 규모미만 업체는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및 의무면제 요청

☑ 규모미만(또는 비대상)인 사업장 행정처리

◎ 제조매출·수입액 규모미만인 경우 >> 의무면제신청서 작성 제출
>> [덧붙임 3] >> ① 면제사유 가. ☑선택

◎ 제조·수입이 없을 경우 >> 비대상신청서 작성 제출
>> [덧붙임 3] >> ① 면제사유 나. ☑선택

[덧붙임3]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FAX(02-6974-1425) 또는 메일(ecoas2@keco.or.kr) 제출

□ 필수 확인사항

- 재활용사업공제조합(E-순환거버넌스)에 가입한 경우에도 출고·수입 실적서는 한국환경공단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기·전자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경우, 제조매출·수입액 규모 상관없이 사전예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법 제9조~11조 관련)

사전예방 의무		대상제품	사업장 이행사항	이행시기
①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전 모델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여부 확인·공표 ※ 모델별 1회 공표	최초출고일(제조) 또는 최초수입신고일(수입)로부터 ★3개월 이내 공표★
②	재질·구조 개선 평가	품목별 대표모델 1개 이상	대표모델(출고·수입량↑) 선정 후 재활용이 쉽도록 재질·구조 개선사항 자체 평가	출고일(제조) 또는 수입신고일(수입) 다음연도 내
③	재활용 정보 제공	정보제공 요청제품	재활용업자로부터 재활용정보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제공(미요청시 의무X)	정보요청을 받은 일자부터 1개월 이내

☎ 사전예방 업무 담당자: 02-3153-0585, 0589

II 실적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2026년 4월 15일(수)까지(※법정 제출기한 준수必)

□ 제출서류

① 전기·전자제품[시행령 별표3] 제1호~제4호 제품군]

①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 및 첨부서류

구분	서류명
공통서류	① 중량산출기초자료(EcoAS 사이트에서 입력제출) - 첨부하는 증빙자료와 입력된 모델별 수량, 증빙 등 실적이 일치해야 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EcoAS 제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업자등록증명 확인) 미동의자에 한함
	③ 연간 전기·전자 매출액(수입액) 증빙자료 1부 - 연도별 손익계산서, 재무제표증명원, 회계결산보고서 등 ☞ 연간 매출액 제출시 그 중 전기·전자제품의 매출액만 구분 기재 필요
	④ 대상 제품별 중량산출 기초자료(실측 사진 등) [덧붙임1 >> 양식3]
제조업체 (출고실적)	■ 출고실적 증빙자료: [덧붙임1 >> 양식1] 참조 - 출고 실적 확인 자료(내부 전산자료(ERP 등), 제품수불부, 결산서 등) ☞ 연간 전체 출고 내역에서 전기·전자제품은 "대상" 등 별도 표기 필요 - OEM 해당시 계약서 및 거래내역 확인 가능한 세금계산서 등
	■ 수입실적 증빙자료: [덧붙임1 >> 양식2] 참조 - 아래 방법(①, ②) 중 선택하여 제출
	①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 '수출입실적' 메뉴 - 기관제출용 증명서(한국환경공단) 신청 및 발급(유료) ※ HS코드 전체, 기간 1.1.~12.31., 엑셀파일 발급 제출, 대상/비대상 구분기재 ② 연도별 수입신고필증, 내부 전산자료, 출고·수출관리대장 등 첨부 및 연간 수입내역 엑셀파일로 제출 ※ 수입일, 신고번호, HScode, 품목명, 규격, 수량, 단위, 과세가격(CIF원화) 등

※ 증빙자료 예시는 [덧붙임1] 내용 참고

② 태양광패널[시행령 별표3] 제3호]

① 특정관리제품(태양광패널) 출고·수입실적서 및 첨부서류

첨부서류
1) 결산보고서 등 출고실적(수입업자는 수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고·수입실적과 연간 특정관리제품(태양광패널) 매출액(수입액)에 대한 증빙자료 함께 제출 (예) 내부 전산자료, 출고·수출관리대장, 회계결산보고서, 수입신고필증(면장) 등 ※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수출입실적' 메뉴→ 기관제출용 증명서(한국환경공단) 신청 및 발급(유료) ※ HS코드 전체, 연도별 1.1.~12.31., 엑셀파일로 발급 제출
2) 특정관리제품(태양광패널)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업자등록증명 확인) 미동의자에 한함]

③ [해당 제조업체만 제출]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

○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

- 전기·전자제품 제조에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
 [※ 규칙 제4조제3항 및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 태양광패널 제조에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
 [※ 고시 제3조제3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첨부서류
1) (공통)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 증명 서류 1부 ※ (예시) 재활용 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원료수불부 등
2-1) (전기·전자제품)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1부
2-2) (태양광패널)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1부

④ [해당자만 확인] 연구개발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출고수입량 제외

※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12호)

제10조(의무대상제품의 출고량 및 매입·판매량 등의 자료접수 등) ③ 공단 이사장은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출고·수입량 및 판매업자의 매입·판매량 산출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연구·개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가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수량을 제외한다.(수출 인정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수출 인정 기준에 준한다.)

5 [해당자만 확인] 기존 폐기물부담금 납부 업체인 경우

- '26년도에만 환경정보장제, 폐기물부담금 모두 실적서 제출 필요
 - (폐기물부담금) '25년도까지의 폐기물부담금 납부를 위한 실적서 제출
 - (환경정보장제) '26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정용 실적서 제출
 - ※ 환경정보장제 → 제품 순중량 무게(kg), 폐기물부담금 → 플라스틱 무게만 제출
- 환경정보장제 재활용 미이행에 따른 부과금은 '27년부터 고지서 발행
 - ※ 공제조합 가입시, 가입비 선납 개념으로 '26년도에 우선 지출될 수 있으나 폐기물부담금과 이종 납부되는 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가입비 납부는 공제조합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제출방법: 전산제출 (☞ EcoAS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 (EcoAS 주소) <http://www.ecoas.or.kr>



[제출방법 참고]

III 문의처

□ [수도권서부] 환경정보장제도 담당자

구분	연락처
전기·전자제품(태양광 패널 포함) 제조·수입업자	☎ 02-3153-0582, 0592, 0593, 0584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업자	☎ 02-3153-0586, 0588
사전예방업무	☎ 02-3153-0585, 0589

□ EcoAS 홈페이지 이용 문의: 032-590-4236

□ 공제조합(E-순환거버넌스): 031-8014-5433, 5436

- 덧붙임 1. 출고·수입실적서 첨부(증빙)자료 예시 1부.
2. 자주하는 질문 모음 1부.
3. 면제·비대상 신청서 양식 1부. 끝.

덧붙임 1 | 출고 · 수입실적서 첨부(증빙)자료 예시

[양식1] 출고실적 증빙자료 예시

■ 연도별 출고 모델별 수량, 단가 등 정보 필요(ERP 자료 등 엑셀 제출)

[작성예시] 2025년도 제품 출고현황(1.1.~12.31.)							
일자	거래처	품명	모델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1	00회사	냉장고	AA	100	1,000	100,000	전기전자제품O
2/2	☆☆회사	냉장고	AA	100	100	10,000	제외(교체용부품)
3/1	△△회사	그릇	BB	300	1,000	300,000	전기전자제품X

☞ 연간 전체 출고 내역에서 전기·전자제품은 “대상여부” 등 별도 표기 필요

[양식2] 수입실적 증빙자료 예시(무역통계진흥원 수입실적증명서)

■ 조회조건: HS코드 전체, 기간: 1. 1. ~ 12. 31. (엑셀파일 발급 제출)

수입실적증명서 (한국환경공단제출용)

사업자	조회조건 [HS CODE : 모두]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기간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일반신고건										규격자료						
신고번호	란	사업자번호	신고일	HS CODE	정수형태	거래구분	거래종류	감면분류번호	중량(Kg)	금액(\$)	금액(원)	거래품명	규격번호	모델규격	규격수량	수량단위
상기 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TRASS(www.trass.or.kr)의 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QR코드를 조회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 : DN26I01C3048963	
1 / 11																

☞ 전기·전자제품은 “대상·비대상” 등 엑셀 셀 색깔 표기, 별도 담당자 의견 기재 가능

[양식3] 무게 증빙자료 예시(실측 또는 카탈로그상 제품 무게 kg단위로 기재)

<p>제품 무게 실측</p>	<table border="1"> <thead> <tr> <th>Mat No.</th> <th>Item Description</th> <th>Weight of plastic(kg)</th> <th>Total Weight without packaging(kg)</th> <th>Total weight with packaging(kg)</th> <th>Polystyrene weight in packaging(kg)</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카탈로그상 순중량 무게</p>	Mat No.	Item Description	Weight of plastic(kg)	Total Weight without packaging(kg)	Total weight with packaging(kg)	Polystyrene weight in packaging(kg)							<p>SPECIFICATION</p> <table border="1"> <tr> <td>형태</td> <td>10W, MP4, VMA</td> <td>JIS 규격</td> <td>2 x 15W</td> </tr> <tr> <td>전원</td> <td>AC 220V ~ 60Hz 15W / DC 9V</td> <td>사이즈</td> <td>약 22(W) x 20(H) x 123(L) mm</td> </tr> <tr> <td>라디오 주파수</td> <td>FM 87.5 ~ 108MHz</td> <td>중량</td> <td>약 125g (본체)</td> </tr> </table> <p>요요전용 제품으로 영상 D/A, 하이브리드, 에터 메모리 디스크는 해당 불가능 합니다.</p> <p>제품설명서 본체 무게</p>	형태	10W, MP4, VMA	JIS 규격	2 x 15W	전원	AC 220V ~ 60Hz 15W / DC 9V	사이즈	약 22(W) x 20(H) x 123(L) mm	라디오 주파수	FM 87.5 ~ 108MHz	중량	약 125g (본체)
Mat No.	Item Description	Weight of plastic(kg)	Total Weight without packaging(kg)	Total weight with packaging(kg)	Polystyrene weight in packaging(kg)																					
형태	10W, MP4, VMA	JIS 규격	2 x 15W																							
전원	AC 220V ~ 60Hz 15W / DC 9V	사이즈	약 22(W) x 20(H) x 123(L) mm																							
라디오 주파수	FM 87.5 ~ 108MHz	중량	약 125g (본체)																							

덧붙임 2 자주하는 질문 모음

Q1. 공제조합 가입 사업자도 실적을 제출해야 하나요?

A. 공제조합(E-순환거버넌스)에 가입하여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업자도 **반드시 공단으로 출고·수입실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2. 수입물품을 단순 판매했을 때, 판매업체에 해당되나요?

A. 수입업자입니다.
판매업체의 정의는 제조·수입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후 판매한 자로서 그 물품의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Q3. 전기전자제품을 취급하지 않는데 실적서 제출해야 하나요?

A. 제조매출액 또는 수입액이 규모미만이거나 전기전자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업체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을 갖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면제 또는 비대상 신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의무 면제 처리가 되지 않으니 의무면제를 위해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4. 의무면제와 비대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의무면제는 전기·전자제품 수입액 3억 미만, 제조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경우이며, 비대상은 전기·전자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의무면제 신청시 당해연도 재활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Q5. 실적제출시 면제되는 항목이 있나요?

A. [환경부예규 제679호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가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수량을 제외하고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6.	기존 폐기물부담금 제출 품목은 어떻게 하나요?
A.	2026년부터 전기·전자제품은 모두 환경정보장제로 신고합니다. 다만, 2025년도까지는 기존대로 폐기물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셔야하며, 2026년에 환경정보장제로 제출한 제품에 대해서는 재활용의무 미이행시 2027년도에 고지서가 부과됩니다. (2026년도만 두 가지 제도에 실적서 모두 제출 필요)

Q7.	전지(배터리)도 대상인가요?
A.	전기적 제어장치(BMS)를 포함한 배터리의 경우 대상입니다. 예) 전지(배터리) 내장 전기전자제품, 보조배터리, 파워뱅크, ESS 등 다만, 관련 시행령, 고시의 제외 품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빙과 함께 비대상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전지류는 제외입니다.

Q8.	무선 제품, 어댑터도 대상인가요?
A.	“전기·전자제품” 정의에 부합하면 모두 대상입니다. 예) 휴대용 선풍기, 블루투스 스피커, 무선 이어폰, 보조배터리, 어댑터 등 어댑터의 경우, 물리적 접속 형상만 변경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9.	태양광 사용 제품, 자가발전 제품도 대상인가요?
A.	“전기·전자제품” 정의에 부합하면 모두 대상입니다. 예) 태양광 계산기, 태양광 램프, 자가발전형 손전등 및 라디오 등

Q10.	전자담배도 대상인가요?
A.	“전기·전자제품” 정의에 부합하면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전자담배 본체 및 충전기 등 전기·전자제품은 환경정보장제로, 전자담배 카트리지는 폐기물부담금으로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 모든 출고수입량의 제외 실적은 전산 제출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